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1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5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도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
 - 위 원 장 : 기획조정실장 → 건설교통국장
 - 부위원장 : 건설교통국장 → 지역개발과장
 - 간 사 : 과장 → 업무담당사무관
 - 서 기 : 담당사무관 → 담당자
- 위원임명 대상범위 확대
 - 도내외 전문가 →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함.
- 위원의 임기 상위법에 맞게 변경
 -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.
- 법령과 중복된 조항 정리
 - 건설기술심의대상 및 심의범위 일부 삭제(제9조 및 제10조 제1항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: 붙임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건설교통국장”으로,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지역개발과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도내외 전문가”를 “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”로 한다.

제4조중 “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”를 “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중 “과장”을 “업무담당사무관”으로, “업무담당사무관으로”을 “담당자로”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의 제목“(심의범위)”를“(위원회의 기능)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를 삭제 하며, 동조제2호중 “사항”을 “사항 및 신기술 적용여부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7호중 “수리계산서 및”을 “수리계산서 및 필요시”로 하고, 동 조제4항중 “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”을 “건설공사의 경우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위원회의 위원장”으로 하고, 동조에 제8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(생략)</p> <p>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.</p> <p>③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충청북도(이하“도”라 한다)내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과 도내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제2조(위원회 구성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—건설교통국장—————</p> <p>—지역개발과장—————</p> <p>③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</p> <p>—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</p>			
<p>제4조(임기)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임기)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</p>			
<p>제5조(간사 및 서기)①(생략)</p> <p>②간사는 도본청 건설기술심의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, 서기는 기술심의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간사 및 서기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 업무담당사무관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 담당자로 한다.</p>			
<p>제9조(건설기술심의대상)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(이하 “심의”라 한다)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법시행령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공사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.</p> <p>1.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</p> <p>2.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·인가 또는 허가 등을 행 행정기관(국가기관을 제외한다)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</p>	<p><삭제></p>			

현행	개정안
<p>3.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</p> <p>4.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사</p>	
<p>제10조(심의범위) (생략)</p> <p>1.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·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</p> <p>3내지 4(생략)</p>	<p>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2.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 사항 및 신기술 적용여부</p> <p>3내지 4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심의요청) ①(생략)</p> <p>1내지 6(생략)</p> <p>7.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</p> <p>8(생략)</p> <p>②내지③(생략)</p> <p>④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심의요청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내지 6(현행과 같음)</p> <p>7. 수리계산서 및 필요시</p> <p>8(현행과 같음)</p> <p>②내지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건설공사의 경우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
<p>제14조(소위원회 등) ①내지②(생략)</p> <p>③소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.</p> <p>④내지⑦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4조(소위원회 등) ①내지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_____ 위원회의 위원장 _____</p> <p>_____</p> <p>④내지⑦(생략)</p> <p>⑧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